

의안번호	2220491
의 퇴 인	조정훈 의원
회 답 일	2026.8.27.
추계번호	26E37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외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년 7,209억원 등 2028~2030년까지 3년간 총 2조 2,299억원(연평균 7,4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122조의3제1항)	-7,209	-7,431	-7,660	-22,299	-7,433

※ 본 추계결과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공제 적용대상 의료비·교육비의 범위를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지출분으로 한정하고,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액 및 세액공제 신청 여부, 결정세액 현황에 따라 실제보다 과소 또는 과대추계 되었을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3	안 제122조의3제1항(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현행)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개정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추가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2조의3제1항(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연장된 적용기한 및 징수기준을 고려하여 2028~2030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8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와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를 나누어 추계한 뒤 이를 합산함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2020~2024 귀속연도 성실신고자 등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향후 추계기간 동안 2020~2024 귀속연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합계액의 연평균 증가율(3.1%)에 따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합계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재정패널조사 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추계
 - 추계에 활용한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당 의료비·교육비 연 지출액에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 세부 구분이 없고, 이를 별

도로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액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가정

-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을 가구원별로 배분하고, 15%의 공제율을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제도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임

-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제122조의3 제1항)
 - 대상: (현행) 성실사업자¹⁾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²⁾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개정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추가
 - 공제대상·금액·공제율

[표 2]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공제율

구 분		한도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간 700만원	15%
	본인·6세 이하·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난임시술비	-	30%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교육비	본인 부양가족 (나이제한× 직계존속 제외)	15%
		취학전 아동,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	

주: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분별 공제율 적용(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1)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 등)
2)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 (감면 실적) 동 특례의 감면실적은 2021년 322억원에서 2025년 37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위 실적은 의료비·교육비 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까지 포함된 결과로,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는 월세액을 제외한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실적만을 제공하지 않음

[표 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세지출	322	334	357	375	377

주: 1.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까지 포함된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조세지출결산서」(2026)

나. 추계 방법

(1)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 상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2020~2024 귀속연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2020~2024 귀속연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의료비 세액공제	72	82	96	114	122
교육비 세액공제	249	250	258	258	240
계	321	332	354	372	36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합계액(362억원)을 기준으로 향후 감면액이 연평균 3.1%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합계액은 2020~2024 귀속연도 기간 동안 연평균 3.1% 증가

[표 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397	-409	-422	-1,227	-409

(2)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원은 「국세통계연보」(2024년 귀속) 상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중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인원 비중(17.0%)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인원 비중(14.1%)를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인원 수에 적용해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종합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이 있는 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인원 제외)의 비중을 추정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 중 실제 세액공제 신청 인원 또는 그 비중을 추정할 수 없어 근로소득자 중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인원 비중을 활용
 - 2024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14,234,519명) 중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인원은 각각 3,300,626명, 2,730,700명으로 나타남
 -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인원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으로 진행한 인원의 비중을 제외하여 근로소득자 중 각 공제 적용 인원의 비중³⁾을 산출
 - 참고로, 재정패널조사 자료 상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1,808명) 중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인원(804명, 근로소득이 있는 자,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인원 제외)의 비중은 44.5%, 교육비를 지출한 인원(1,572명)의 비중은 86.9%로 나타남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별 의료비·교육비 지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을 추정함

- 재정패널조사 자료 상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현행 성실사업자 대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3)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비중(26.6%)과 동일하게 각 세액공제 적용인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분포한다고 가정

자를 각각 제외하고, 해당 인원이 포함된 가구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을 집계함

- 가구별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을 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원 단위로 배분하여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을 추정함
 - 가구별 가구 총 종합소득에서 각 가구원의 종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후 동 비중을 가구 단위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에 곱해 이를 가구원별로 배분
 - 가구원 단위로 배분된 의료비 지출액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을 추정함
- 공제대상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을 산출함
 -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지출대상자(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의 수에 따른 한도가 존재하나, 재정패널조사는 교육비 지출대상자별로 구분된 가구단위 교육비 지출액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과다 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보정함

□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금액(추정치)에 적용 대상자 수(추정치)를 곱해 기준연도 세수효과를 추계

-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인당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인당 공제금액을 추정
 - 의료비·교육비를 수혜자별로 구분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15%의 공제율을 적용함
- 추계 결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2024년 기준 6,220억원의 소득세수 감소 예상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4,364억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1,856억원 감소 예상

[표 6]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2024 귀속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2024년 귀속 국세통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인원 ²⁾	1인당 의료비 지출액 ³⁾	1인당 세액공제금액 ⁴⁾	2024년 귀속 국세통계	세수효과 (억원)
	종합소득 인원 ¹⁾				1인당 결정세액	
	A	B	C	D=C×15%	E	F=-min(D, E) ×B
0 이하	0	0	0.00	0.00	1.54	0
1천만 이하	3,893,249	662,393	1.68	0.25	0.14	-957
2천만 이하	2,656,915	452,045	1.99	0.30	0.37	-1,350
3.5천만 이하	2,242,239	381,492	1.94	0.29	1.10	-1,112
4천만 이하	414,010	70,439	1.97	0.30	2.11	-209
5천만 이하	579,179	98,541	1.95	0.29	2.89	-288
6천만 이하	387,959	66,007	2.29	0.34	4.08	-227
7천만 이하	271,691	46,225	3.20	0.48	5.57	-222
합계	-	-	-	-	-	-4,364

주: 1)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종합소득 인원 수

2) 「국세통계연보」 상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중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인원의 비중 (17.0%)을 종합소득규모별 종합소득 인원(A)에 적용하여 추정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3%를 초과하는 연간 의료비 지출액 추정

4) 연간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2025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7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2024 귀속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2024년 귀속 국세통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인원 ²⁾	1인당 교육비 지출액 ³⁾	1인당 세액공제금액 ⁴⁾	2024년 귀속 국세통계	세수효과 (억원)
	종합소득 인원 ¹⁾				1인당 결정세액	
	A	B	C	D=C×15%	E	F=-min(D, E) ×B
0 이하	0	0	0.00	0.00	1.54	0
1천만 이하	3,893,249	548,016	0.72	0.11	0.14	-590
2천만 이하	2,656,915	373,989	0.99	0.15	0.37	-555
3.5천만 이하	2,242,239	315,619	0.82	0.12	1.10	-387
4천만 이하	414,010	58,276	0.63	0.09	2.11	-55
5천만 이하	579,179	81,526	1.12	0.17	2.89	-137
6천만 이하	387,959	54,609	0.94	0.14	4.08	-77
7천만 이하	271,691	38,243	0.95	0.14	5.57	-55
합계	-	-	-	-	-	-1,856

주: 1)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종합소득 인원 수

2) 「국세통계연보」 상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인원의 비중 (14.1%)을 종합소득규모별 종합소득 인원(A)에 적용하여 추정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연간 교육비 지출액을 추정하고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추정결과를 보정

4) 연간 교육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2025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7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를 기준으로 향후 연평균 3.1%씩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앞서 산출한 2020~2024 귀속연도 현행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고금액 합계액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활용

[표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6,812	-7,022	-7,238	-21,072	-7,024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외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년 7,209억원 등 2028~2030년까지 3년간 총 2조 2,299억원(연평균 7,4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397	-409	-422	-1,227	-409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6,812	-7,022	-7,238	-21,072	-7,024
합계	-7,209	-7,431	-7,660	-22,299	-7,433

※ 본 추계결과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공제 적용대상 의료비·교육비의 범위를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지출분으로 한정하고,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액 및 세액공제 신청 여부, 결정세액 현황에 따라 실제보다 과소 또는 과대추계 되었을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